

국토교통부령 제000호

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

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4조제5항 전단 중 “요청할 수 있다”를 “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 한다.

제6조제6호 중 “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”를 “등 시설물로 인해”로 한다.

별표 1의 평면도의 작성요령란 중 “도로부지”를 “도로점용지 경계선, 도로부지”로, 같은 란 중 “배수시설”을 “테이퍼, 변속차로, 부가차로, 배수시설”로, 같은 란 중 “기본도”를 “기본도(점용면적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연속지적도를 말함)”로 한다.

별표 2 비고 제3호 중 “간”을 “내 시설물(건축한계선 등 본선 차량 통행의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물) 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(개정 2010.9.15, 2021.00.00)

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(제4조제4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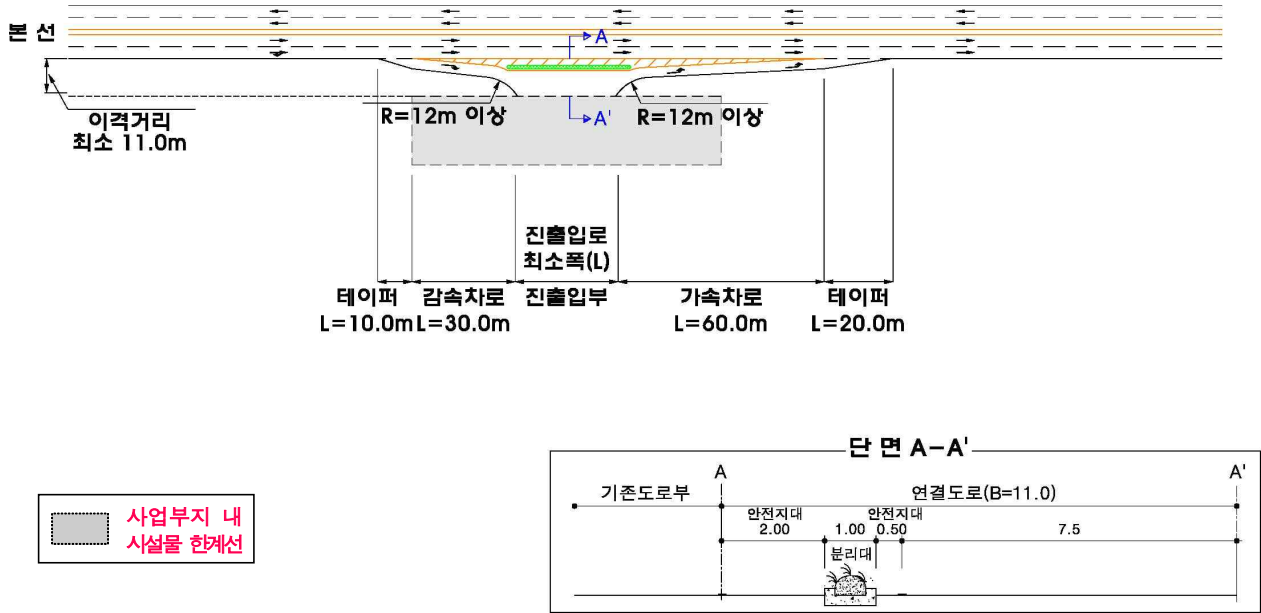
도 면 명	작 성 요 령
위 치 도	1/50,000(또는 1/25,000)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
평 면 도	연결부 주변의 지형·지물을 1/1,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(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, 포장 끝선, 길어깨선, 도로점용지 경계선, 도로부지 경계선, 점도구역선,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, 테이퍼, 변속차로, 부가차로, 배수시설, 분리대,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. 다만,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(점용면적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연속지적도를 말함)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)
종 단 면 도	세로 방향 1/1,200 이상, 가로 방향 1/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[측점(測點)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,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]
횡 단 면 도	측점마다 1/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(배수시설, 분리대, 도로의 중심선, 도로부지 및 점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.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)
구 조 물 도	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
부 대 공 사 도	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(방호시설, 도로안전시설, 노면표시 등)에 대한 상세도 작성

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[별표 2] (개정 2014.12.29, 2021.00.00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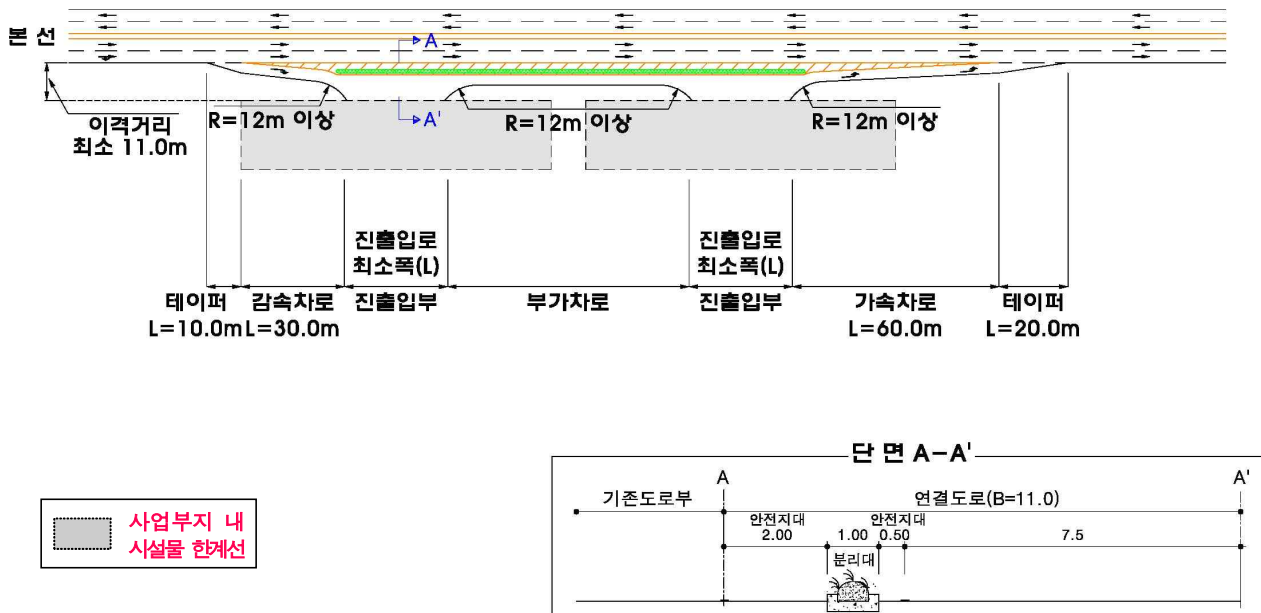
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(제4조제4항 관련)

1.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

가. 1개소 연결의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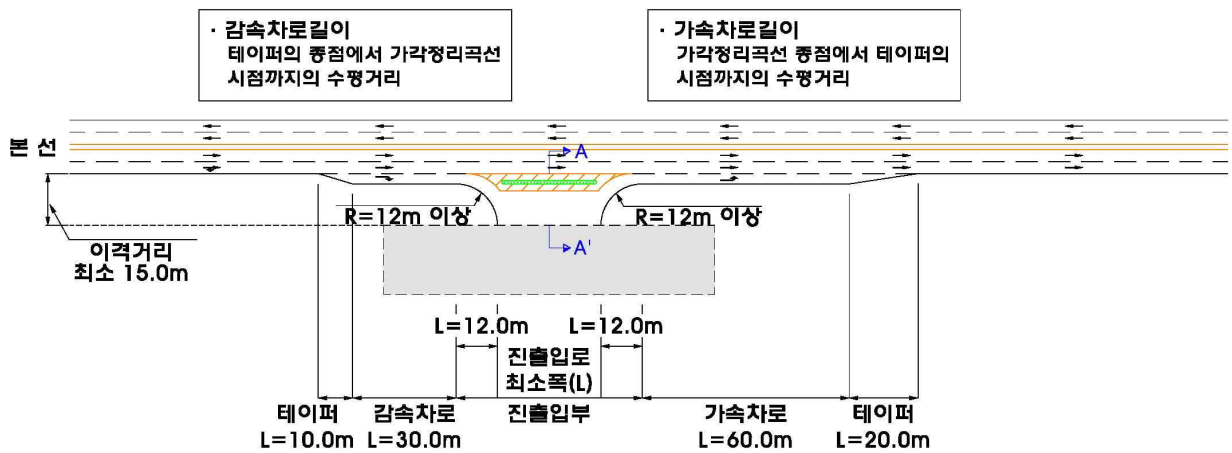


나.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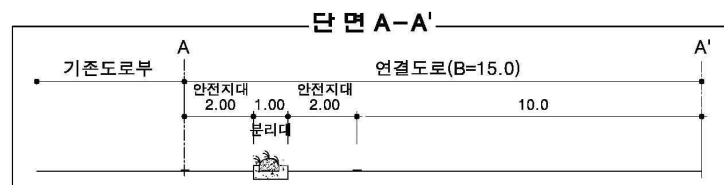


2.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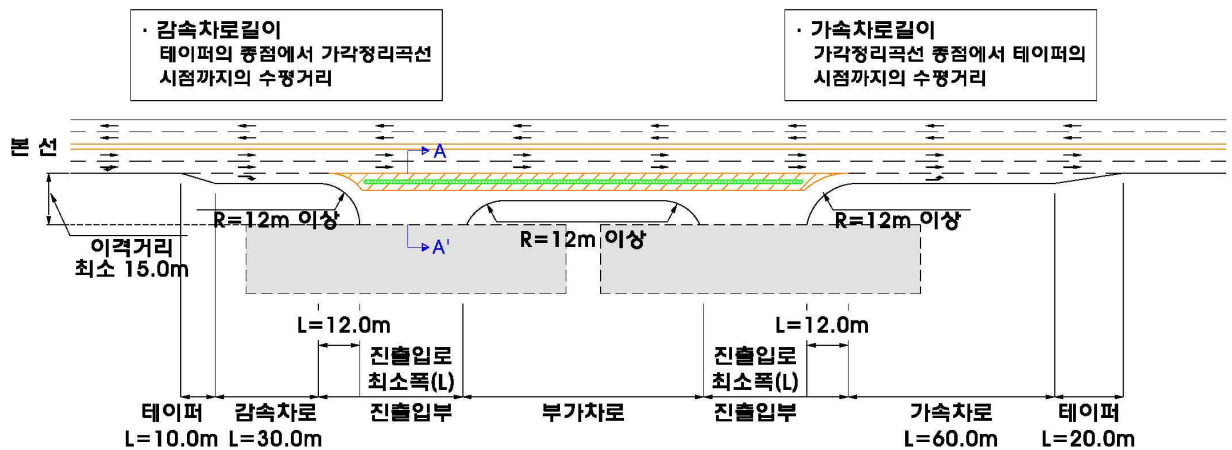
가. 1개소 연결의 경우



■ 사업부지 내
시설물 한계선



나.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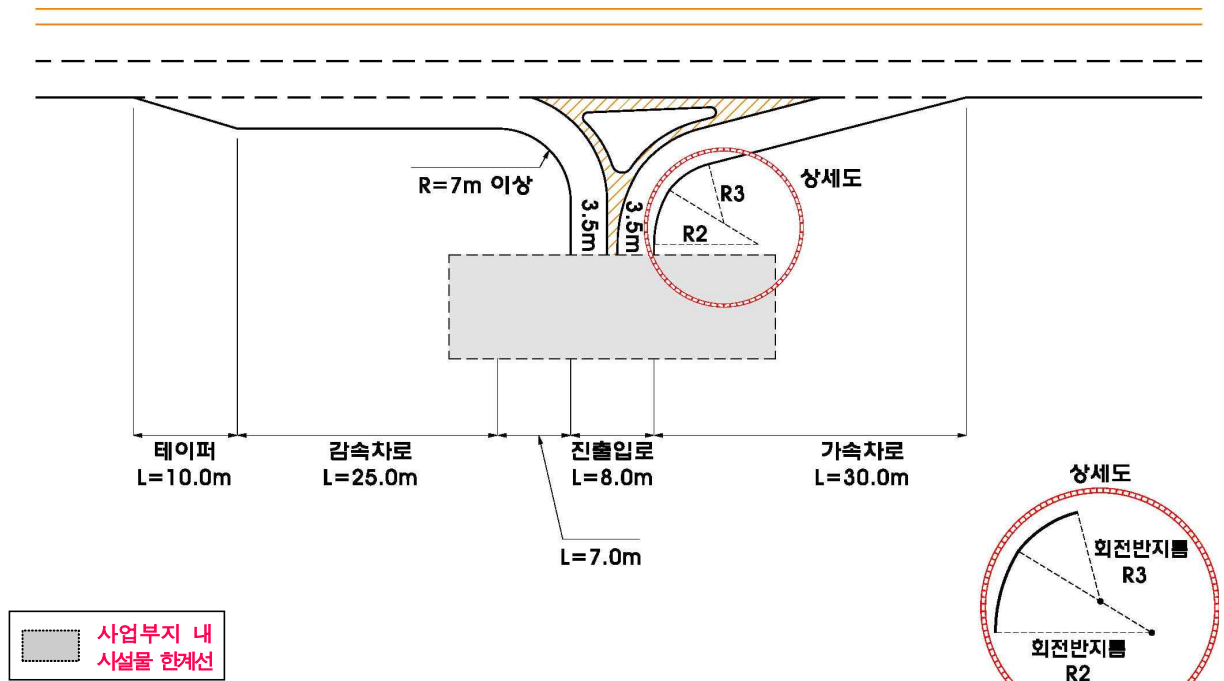


■ 사업부지 내
시설물 한계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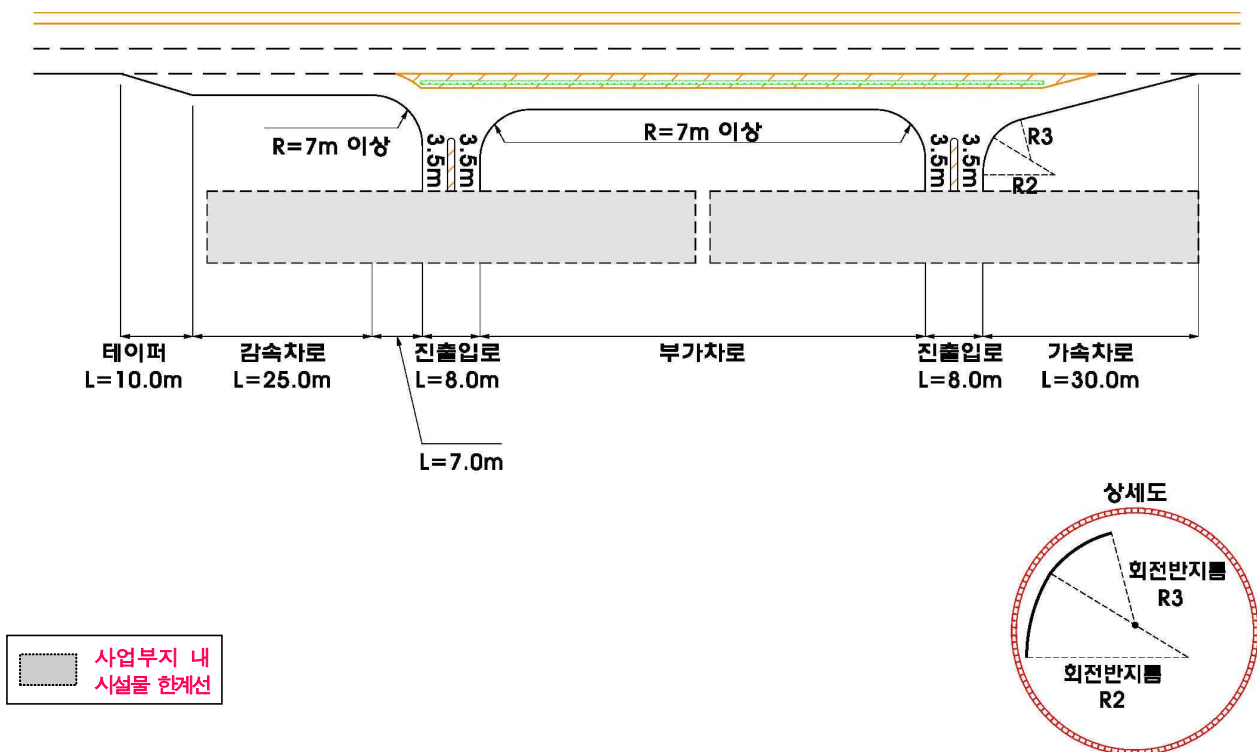


3.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

가. 1개소 연결의 경우



나.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



4.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(代替) 설치
가. 곡선 반지름(R_4) 5미터 이상인 경우

가속차로의 길이(미터)	R_2 (미터)	R_3 (미터)
30	10	7
25	7	5
20	7	5

[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설]

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성명(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				
	연락처	전화	휴대전화	전자우편	
신청 내용	① 연결 목적				
	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				
	연결 신청 장소				
	③ 사업부지 장소				
	사업부지 면적 (건축면적, 법정주차대수 등)				

「도로법」 제52조, 제61조 및 「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.

년월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도로관리청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위치도 2. 현장사진	수수료 : 없음
유의사항	1.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. 2. 사전심사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
작성방법	①란은 휴게소·주유소·공장·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.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.(예: 국도 ○○호선 등)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.	

